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강승수 의원 외 10명

2.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 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강 보호와 금연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장의 책무규정(안 제2조 ~ 제4조)
- 금연연구역의 지정 등과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금연활동 지원 및 금연 지도원에 관한 사항(안 제8 ~ 제9조)
-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안 제10조)
-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조의5, 제3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4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은

-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시민의 권리·의무 등(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안 제7조), 금연활동 지원(안 제8조), 금연지도원(안 제9조), 과태료(안 제10조) 등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시공원 244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94개소, 버스정류장 712개소, 택시승강장 29개소, 주유소 128개소 등 총 1,20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계 법 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 25.(생략)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과태료)

③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